

#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79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1. 15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개정이유

- 관내 환경오염배출업소의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자금 지원확대로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환경 투자를 유도하고자 함

## 주요내용

- 관내 환경오염배출업소의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자금 지원 확대
  - 용자한도액을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증액(안 제4조의2, 제4조의4)
  - 기존 「대기환경보전법」 과 「악취방지법」 에 시행하던 사업을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과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으로 확대  
(안 제4조의2, 제4조의4)
- 기타 불필요 조항 수정(안 제4조, 제4조의2, 제4조의4)

개정조례안 : 불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2

현행조례 : 불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입법예고결과 : 의견있음(불임4)

- 입법예고 : 2015. 11. 10. ~ 11. 30.(20일간)

방침결재 : 불임5

< 붙임 1 >

**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**

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 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용자 및 이자차액 보조 대상은 안산시에 사업장을 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한한다.

8. 「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

9. 「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질연속자동 측정기기를 부착하려고 하는 자

10.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,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안전 시설 설비를 설치·개선·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자

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” 를 “제1항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5억원” 을 “10억원” 으로 한다.

제4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.

제4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5억원의 범위 안에서” 를 “10억원의 범위에서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장은 제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「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(이하 "경기도조례"라 한다)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(대기·수질·악취)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비 설치·개선·구입 자금을 용자받을 경우 용자액 중 10억원의 범위에서 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액 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오염

방지시설 설치자금(대기·수질·악취)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비 설치·개선·구입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융자액 중 10억원의 범위에서 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액 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⑤ 이자보조액은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약한 이자차액보전을 범위로 한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환경정책과
입 안 자	실과장 직위·성명	환경정책과장 강 상 봉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환경정책계장 김 선 미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안 준 식 (행정 2613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b>제4조(기금의 용도) ① (생략)</b></p> <p>5. 대중교통용 무공해·저공해자동차 구입에 따른 융자 및 이자차액 보조사업</p> <p>6. 무공해·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설치에 따른 이자차액 보조사업</p> <p>7.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오·폐수 병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융자 및 이자차액 보조사업</p> <p>8. 악취방지시설 설치 또는 개선에 따른 융자 및 이자차액 보조사업</p> <p>9.~11. (생략)</p> <p><b>② (생략)</b></p> <p><b>제4조2(보조·융자대상 및 조건) ① 제4조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융자 및 이자차액 보조 대상은 시내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.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한하며,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한한다.</b></p> <p>4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에 따라 대중교통용 무공해·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</p> <p>5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에 따라 무공해·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</p>	<p><b>제4조(적용대상 용도) ①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9.~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②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<b>제4조2(보조·융자대상 및 조건) ① 융자 및 이자차액 보조 대상은 안산시에 사업장을 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한한다.</b>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

현행	개정안
<p>6. 「하수도법」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오·폐수병합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(다만,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)</p>	<p>&lt;삭제&gt;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8. 「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9. 「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질연속자동 측정기기를 부착하려고 하는 자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10.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,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비를 설치·개선·구입 하고자 하는 사업자</p>
<p>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 ----- -----</p>	<p>② 제1항 ----- -----</p>
<p>1. ----- 5억원 ----- ----- -----</p>	<p>1. ----- 10억원 ----- ----- -----</p>
<p>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용자조건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</p>	<p>&lt;삭제&gt;</p>
<p>1. 용자한도액 : 1인(업체)당 3천만원이하</p>	
<p>2. 용자금의 대출금리 : 무이자</p>	
<p>3. 용자(상환)기간 :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</p>	
<p>제4조4(이자차액 보조사업 등)</p>	<p>제4조4(이자차액 보조사업 등)</p>
<p>① 시장은 제4조의2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「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(이하 "</p>	<p>① 시장은 제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「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(이하</p>

현행	개정안
<p><u>경기도조례"라 한다)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에 따른 대중교통용 무공해·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용자받을 경우 경기도조례에 따라 보전받은 이자차액을 제외하고 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액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시장은 제4조의2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의한 대기환경개선자금을 용자받을 경우 용자액 중 5억원의 범위 안에서 기업체가 부담 하여야 할 이자액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시장은 제4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「환경개선특별회계법」 제4조제2항에 따라 무공해·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설치자금을 용자받을 경우 공급시설 1기소당 용자액이 7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업체게 부담하여야 할 이자액 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5억원의 범위 안에서</u> ----- -----</p> <p>⑤ <u>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자보조액은 제 4조의2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약한 이자차액 보전을 범위 이내에 한한다.</u></p>	<p><u>"경기도조례"라 한다)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(대기·수질·악취)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비 설치·개선·구입 자금을 용자 받을 경우 용자액 중 10억원의 범위에서 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액 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시장은 제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(대기·수질·악취)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비 설치·개선·구입 자금을 용자 받을 경우 용자액 중 10억원의 범위에서 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액 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</u>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10억원의 범위에서</u> ----- -----</p> <p>⑤ <u>이자보조액은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금융 기관과 협약한 이자차액보전을 범위로 한정한다.</u></p>